



**WIPO | PCT**

The International  
Patent System

# ■ 코로나19 보건 위기가 PCT에 미치는 영향

**2020년 5월 8일**  
**(2020년 6월 8일**  
**일부 내용 업데이트)**

**김태근**

PCT Legal and User Relations Division

# 현황(1)

- 수리관청(RO)들이 아직 업무 중인가?
  - RO/IB 포함, 대부분의 RO에서 국제출원 업무 지속 중
  - 일부 RO는 전자적 형식으로만 국제출원 접수 중
  - 일부 RO는 출원 접수 중단  
(<https://www.wipo.int/pct/dc/closeddates/faces/page/index.xhtml> 참고)

## 현황(2)

- 국제출원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?
  - 아직 파악되지 않음
  - 출원 감소 가능
- 우편 및 사설 택배 서비스에 지장 초래
  - 여러 국가에서 우편 배달에 지장
  - 사설 택배 서비스에도 영향
- 매일 상황 변화. 각자 국내 상황 예의주시 필요.

# 국제사무국(IB) 현황(1)

- 대부분의 직원이 원격 근무 중. 대부분의 서비스 평소대로 제공
- RO/IB 국제출원 접수 중
  - 전자출원 소프트웨어(ePCT, PCT-SAFE) 이용이 최선
  - 불가능하면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 이용
  - 아무것도 안되면 팩스 출원이 마지막 방법
  - 많은 국가에서 우편 및 사설택배 서비스가 불안정하므로 서면 출원은 피해야 함
- IB에서의 국제출원 처리는 전반적으로 양호

# 국제사무국(IB) 현황(2)

- 출원인과 관청 대상 서식/통신은 현재 전자적 형식으로만 이루어짐
    - ePCT 또는 (국제공개 후) PATENTSCOPE에서 서식 조회
    - 서식은 PDF 첨부문서로 송부됨
    - 우선권서류 및 IB 파일 내 서류의 인증사본은 전자적 형식  
으로만 발행
    - 가능하면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(DAS) 사용
    -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출원인은, IB가 이메일 첨부  
문서로 서식 및 기타 통신사항을 송부할 수 있도록 이메일  
주소 제공 필요
- ([https://www.wipo.int/pct/ko/news/2020/news\\_0008.html](https://www.wipo.int/pct/ko/news/2020/news_0008.html))

# 국제사무국(IB) 현황(3)

- IB에 문서 제출 방법:
  - 가급적 전자적 형식으로만:
    - ePCT (강력 인증과, 또는 강력 인증 없이)
    -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
    - 다른 방법이 없으면 팩스
- IB와 전자적으로 통신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  
([https://www.wipo.int/pct/ko/news/2020/news\\_0008.html](https://www.wipo.int/pct/ko/news/2020/news_0008.html))

# PCT에 따른 특정 보호수단(1)

- PCT는 관청이 공식 휴무인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 기한 연장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
- 국내기한을 연장시키는 국내규정은 국제단계 동안의 PCT 기한에 적용되지 않음.  
단, 국내단계 동안의 기한에는 적용 가능
- 우선권 기간:
  - 관청이 출원 업무 중단을 선언한 경우에만 파리협약 제4조 C(3)의 보호 적용
  - 관청이 업무를 지속하는 경우 우선권 회복(규칙26의2.3 및 49의3) 활용 가능(해당 관청에서 적용가능한 경우)

# PCT에 따른 특정 보호수단(2)

- 규칙 82의4.1 -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 " ... 천재지변, 기타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하여"
  - 규칙82의4.1은 PCT에 따른 모든 기한에 적용(예: 수수료 납부, 우선권서류 제출, 우선권 주장의 정정 등). 단, 우선권 기간과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제외
  - IB는 관련 요청을 출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
  - 바이러스가 국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증거 불필요
  - 사무총장은 국내관청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([https://www.wipo.int/pct/ko/news/2020/news\\_0009.html](https://www.wipo.int/pct/ko/news/2020/news_0009.html))
- 규칙 80.6 및 82: 우편 발송 지연(5일/7일 규칙)

# PCT에 따른 특정 보호수단(3)

## ■ RO/IB의 서식 PCT/RO/117

("국제출원 취하 간주 통지서") 발행 연기

- 출원인이 납부 대상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
- RO/IB는 서식 PCT/RO/133을 발행해 모든 미납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것임(단, 가산료 없음)
- RO/IB는 2020년 7월 1일 전에는 서식 PCT/RO/117 (수수료 미납으로 인해 국제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는 선언)을 발행하지 않을 것임
- 사무총장은 모든 수리관청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([https://www.wipo.int/pct/ko/news/2020/news\\_0009.html](https://www.wipo.int/pct/ko/news/2020/news_0009.html))

# PCT에 따른 특정 보호수단(4)

- 조약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내단계 진입 기한을 놓친 경우
  - 규칙 49.6의 보호수단 활용
  - DO/EO에서 국제출원 회복을 위해 보다 유리한 국내규정 적용 가능

# 추가사항

- PCT 메인 페이지 상단 "코로나19 업데이트" 상자의 링크 클릭해 최신 소식 확인

<https://www.wipo.int/pct/ko/index.html>

- 마드리드/헤이그 시스템에 관한 유사 내용도 상기 페이지들에서 확인 가능하며 PCT 페이지에서 링크로 연결

- 다른 한국어 웨비나:

<https://www.wipo.int/pct/ko/seminar/webinars/index.html>

- 회원국들에서의 코로나19 지식재산 정책 추적 도구:

<https://www.wipo.int/covid19-policy-tracker/#/covid19-policy-tracker/ipo-operations> (영문)

# 문의

- PCT Information Service
  - 전화: (+41-22) 338 83 38
  - E-mail: [pct.infoline@wipo.int](mailto:pct.infoline@wipo.int)
- 발표자: [taegeun.kim@wipo.int](mailto:taegeun.kim@wipo.int)